디지털배지운영에관한규정 5-1-81

규정번호	5-1-81
제정일자	2026.5.18
최근개정	-
개정차수	-
관리부서	교육과정혁신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취득한 성과와 역량을 디지털배지 형태로 인증·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"디지털배지(Digital Badge)"란 학습자의 성취, 활동 또는 역량을 디지털 형태로 시각화하여 인증하는 증표를 말한다.

② "디지털배지 발급체계"란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성과를 기준에 따라 인증·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③ 디지털배지는 우리대학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며, 배지의 명칭·발급 기준·세부 내용은 프로그램별로 별도로 정한다.

④ 디지털배지는 학칙 및 학사 내규에서 정한 학점, 성적, 졸업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재학생 및 우리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발급 기준) ① 디지털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급할 수 있다.

1. 교과목의 이수 및 해당 프로그램에서 정한 성취기준 충족
2.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및 이수 기준 충족
3. 디지털배지 발급은 사전에 지정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한한다.

② 디지털배지 발급은 교과 성적·출석·평가 등 학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.

제5조(발급 및 관리) ① 디지털배지는 우리대학이 지정한 디지털배지 플랫폼을 통해 발급한다.

② 발급된 디지털배지는 학습자의 이력으로 누적 관리하며,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·활용할 수 있다.

③ 디지털배지 발급 및 활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우리대학 개인정보처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④ 발급 정보의 기록·보존 기간은 학사 내규의 성적 및 학적 관련 자료 보존 기준에 준한다.

제6조(관리부서) ① 디지털배지 발급 및 관리는 교육과정혁신팀에서 총괄한다.

② 디지털배지 발급 프로그램 운영 부서는 발급 기준에 따른 평가·이수 자료를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총괄 부서는 발급 승인, 이력 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, 학사 내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시행 이전에 운영된 디지털배지 또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본 규정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.